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 기준 정비〉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661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 개요

1.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66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5. 11. 27.
- (3) 회 부 일 : 2025. 11.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 국가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상이하여 직종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함으로써 직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등).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을 현행 ‘일률적 2회 제한’에서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3회 범위’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 는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 -- ----- ----- <u>사람은</u>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한 <u>자</u> 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u>자</u> 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 ----- - <u>사람이나</u> ----- ----- <u>사람은</u> ----- ----- -----.

③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및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

2. 검토의견

- 현행법에서는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으로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교정사’ 등을 명시하고 있고,¹⁾

의지·보조기 기사(제72조)와 언어재활사(제72조의2), 장애인재활상담사(제72조의3)의 경우는 이들의 자격요건·종류·취득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참고자료 1: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요건 등에 관한 조문).

-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는 한국보건의

1) 「장애인복지법」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點譯)·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료인국가시험원²⁾에서 주관하는 국가자격인데 비해,

- 점역·교정사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수어 통역사는 한국농아인협회가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것임.³⁾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현황>

(‘24년 말 기준)

구분	의자보조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통역사	점역·교정사
자격보유자 수	• 1,590명	• 1급: 5,566명 • 2급: 15,580명	• 1급: 3,830명 • 2급: 1,946명 • 3급: 90명	• 2,032명	• 1급: 218명 • 2급: 238명 • 3급: 1,244명
	합계: 1,590명	합계: 21,146명	합계: 5,866명	합계: 2,032명	합계: 1,700명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72조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71조	「장애인복지법」 제71조
자격 성격	국가자격	국가자격	국가자격	민간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국가공인
시행 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한국농아인협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 활동 영역	•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자·보조기의 제조·개조·수리기관 등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언어재활을 실시하는 민간(사설)기관, 장애인복지관 등	•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 수어통역센터, 종합병원 등	• 점자도서관, 장애인복지관 등

자료: 보건복지부

- 2) 「장애인복지법」 제73조(국가시험의 실시 등) ①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이하 “의지·보조기 기사등”이라 한다)의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되, 실시시기·실시방법·시험과목, 그 밖에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 3) 「자격기본법」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 한편,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응시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제74조에서 일괄 규정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등은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자는 수험정지 또는 합격 무효 조치 후 ‘2회’에 한하여 동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지·보조기 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이 법이나 「형법」 제234조·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5.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개정안은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을 일률적 ‘2회 제한’에서 부정행위 사안에 따른 ‘3회 범위’로 조정함으로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다른 보건의료인력

(의료인 및 의료기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등) 시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제한을 통일하여 국가시험 운영 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의료인 및 의료기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등의 경우는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 보건의료인력 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제한 현황>

관련 법률	직 종	응시자격 제한 (부정행위자)	비고
「의료법」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 수험정지 및 합격무효 -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 라 3회의 범위 내 응시 제한	
「간호법」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국민영양관리법」	영양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구조사		
「약사법」	약사, 한약사	- 수험정지 및 합격무효 - 2년 응시제한	개 정 안 발의
「공중위생 관리법」	위생사		
「장애인 복지법」	의지보조기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 수험정지 및 합격무효 - 2회 응시제한	
「국민건강증진법」	보건교육사	- 처분기준 없음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조공학사		
「노인복지법」	요양보호사(상시시험)	- 수험정지 및 시험 무효	

자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한편,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하는 약사·한약사·위생사·보건교육사 및 보조공학사⁴⁾, 요양보호사⁵⁾ 국가시험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기준을 조정하려는 법률안이 남인순의원 대표발의로 각각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심사 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음.

<유사 취지 법률안 발의 현황>

의안번호 (대표발의 의원)	법률안	주요내용	시행일
제2214648호 (남인순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사람 및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u>3회의 범위에서 제한</u>	공포 후 3개월
제2214649호 (남인순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자 및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u>3회의 범위에서 제한</u>	2026년 1월 1일

4) 보건교육사와 보조공학사의 경우는 신설 조항임.

5) 요양보호사는 다른 자격 시험과 당시 연 1회 시행이 아닌 연중 상시시험임을 고려하여 응시자격 제한을 다르게 설정함.

의안번호 (대표발의의원)	법률안	주요내용	시행일
제2214658호 (남인순의원)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시험에 응시한 사람 및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를 <u>3회의 범위에서 제한</u>	2026년 1월 1일
제22146660호 (남인순의원)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시험에 응시한 사람 및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u>3회의 범위에서 제한</u>	공포 6개월
제2214647호 (남인순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사람 및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자격시험의 응시를 <u>12개월의 범위에서 제한</u>	공포 6개월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후 정리(<https://likms.assembly.go.kr/bill/>)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부정행위 시 응시 제한 횟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리시험 등 위반 정도가 엄중한 경우 3회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에 공감함.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요건 등에 관한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의지·보조기 기사”라 한다)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해당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받은 자

②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③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은 다른 자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언어재활사”라 한다)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언어재활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언어재활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대학원(원격대학에 두는 대학원에 한정한다)·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

③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④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언어재활기관의 범위, 대학원·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와 언어재활사로서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장애인재활상담사”라 한다)에게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삭제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 한 사람

3. 삭제

- ③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 ④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관리, 제2항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관련 기관·관련 학과·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